#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01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·한민수·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 · 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 고 있으며, 처리기간·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0조, 제21조및 제38조 등).

법률 제 호

##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중 "인증심사를"을 "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명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제21조제4항 중 "심사를"을 "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 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제38조제3항 중 "그"를 "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
- 에 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제56조제1항제1호의2 중 "제20조제8항"을 "제20조제9항"으로 한다. 제62조제3항제1호 중 "제20조제8항"을 "제20조제9항"으로, "제38조제4 항"을 "제38조제6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심사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, 제21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0조(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20조(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) ① ~ ④ (생 략) 및 심사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 (<del>5</del>) -----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심사 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-----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터 7일 이내에-----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 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. (7) (생략) (7) (현행과 같음)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<신 설>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 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 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## <u>⑧·⑨</u> (생 략)

- 제21조(인증의 유효기간 등) ① 저 ~ ③ (생 략)
  -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<u>농림축산식품부령</u>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(생 략)

<신 설>

⑦ (생략)

과 같음)
∥21조(인증의 유효기간 등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<b>4</b>
심사 결과를 통지받은
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
⑤
<u>그 신청을 받은 날</u>
부터 7일 이내에

(9)·(11) (현행 제8항 및 제9항

- ⑥ (현행과 같음)
-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 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 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-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- 제38조(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저 신청 및 심사 등) ①·② (생략)
  -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④・⑤ (생략)

제56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세38조(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
신청 및 심사 등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③
공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
<u>부터 30일 이내에 그</u>
④ 제3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
을 받은 공시기관은 그 신청을
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
사에 대한 결과를 해당 신청인
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
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따른다.
$\underline{6} \cdot \underline{7}$ (현행 제4항 및 제5항
과 같음)
세56조(수수료) ①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	제20조기	세 <u>8항</u> ()	제342	조제4형	) }
에서	준용하	는 경	우를	포함형	<u>.</u> }
다)어	따라	인증	변경	승인을	<u>)</u>
받으	려는 자				

- 2. ~ 5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
제6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20조제8항(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자
- 2. ~ 5. (생략)
- ④・⑤ (생 략)

1의2. <u>제20소제9항</u>
O F (취레기 기수)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C27(제대의) ① (첫체제
제6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3
1 -1007 -107
1. <u>제20조제9항</u>
100 → 10 <del>=</del>
<u>제38조제6항</u>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현행과 같음)